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시행 세칙

제정 : 1989. 08. 30
개정 : 1990. 06. 20
개정 : 1995. 09. 05
개정 : 1996. 04. 25
개정 : 1999. 09. 21
개정 : 2003. 04. 17
개정 : 2003. 08. 21
개정 : 2004. 11. 16
개정 : 2007. 02. 06
개정 : 2013. 07. 19
개정 : 2015. 05. 13
개정 : 2017. 06. 15
개정 : 2017. 12. 14
개정 : 2019. 06. 20
개정 : 2021. 02. 08
개정 : 2021. 04. 26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제98조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

(1) 정기 이사회는 연 3회, 임시 이사회는 규정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안에 1회, 매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안에 1회 개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을 위한 이사회는 10월을 전후하여 1회 개최한다.

제 3 조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회의록은 사무처장이 작성하여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4 조 (추가경정예산) 이사장과 총장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추가경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에 제출,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조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제31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1. 학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학생 정원의 증·감, 학과, 대학, 대학원의 신설과 폐지 등)
2.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설비 및 시설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의 2 (임원 선임 방법) 학교법인 정관 제31조 제2항 4호, 5호 중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임되는 총장, 개방이사, 추천감사의 경우 다수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1차 투표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을 득한 후보가 없는 때에는 1위와 2위 후보자에 대해 과반수 찬성을 득한 후보가 나올 때까지 결선 투표하여 최종 선임한다.<신설 2021.04.26>

제 6 조 (학사, 재무이사) 이사장은 대학행정과 이사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사이사 및 재무이사를 임명하여 관련 업무를 관장케 하며 각각 학사위원회, 재정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토록 한다.<개정 2017.12.14>

제7조 (상임회의) 삭제

제7조의 2 (각 위원회) 삭제

제7조의 3 (위원임기) 삭제

제7조의 4 (위원장) 삭제

제7조의 5 (회의소집) 삭제

제8조 (소위원회) 이사회 내에 기획운영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 재무담당위원회(이하 “재정위원회”라 한다.), 학사담당위원회(이하 “학사위원회”라 한다.), 총장선출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06.20>

제8조의 2 (기획위원회 구성) 기획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기획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14>

제8조의 3 (기획위원회 기능) 기획위원회는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1. 법인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심의
3. 기부금 모금 방안 심의
4. 이사 후보 추천 심의
5. <삭제 2017.06.15>
6. <삭제 2017.06.15>
7. <삭제 2017.06.15>
8. <삭제 2017.06.15>

제8조의 4 (임기) <삭제 2017.06.15>

제8조의 5 (위원장) <삭제 2017.06.15>

제8조의 6 (회의 소집) <삭제 2017.06.15>

제8조의 7 (재정위원회, 학사위원회, 총장선출위원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재정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재정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14>
2. 재정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다음 사항들을 협의하며 이사회에 제의한다.
가.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 심의<개정 2017.12.14>

나. 법인 수익사업의 1년 활동 계획과 목적 심의<개정 2017.12.14>

다. 법인 신규 수익사업에 대한 심의<개정 2017.12.14>

라. <삭제 2017.12.14>

② 학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학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며, 학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14>

2. 학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다음 사항들을 협의하여 이사회에 제의한다.

가. 교원의 임면 심의

나. 교원의 TO 배정 및 승진 재계약

다. 학교의 교육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심의

라. 학교의 사명에 대한 성찰 및 심의

③ 총장선출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별도로 심의·의결하여 정한다.

④ 이사장은 법인과 학교의 예·결산 심의를 위하여 재정위원 중 일부위원과 보직교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법인예결산소위원회, 학교예결산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12.14>

⑤ 이사장은 법인과 학교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위원 중 일부위원과 보직교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신설 2017.12.14>

제8조의 8 (소위원회 위원장 등) ① 기획위원회, 재정위원회, 학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06.20>

② 기획위원회, 재정위원회, 학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③ 기획위원회, 재정위원회, 학사위원회 회의는 이사장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

제9조 (법인사무처) ① 법인사무처의 분장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법인 직원의 인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은 법인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 2 (남양주캠퍼스 설립기획단) <삭제 2021.02.08>

제9조의 3 (일반직원의 소속 변경 및 파견) 이사장은 총장과 협의하여 법인 일반직원과 대학 일반직원 간 상호 소속을 변경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신설 2021.02.08>

제10조 (수익사업체) ①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에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이 경영하는 수익사업체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1조 (정년) 교원의 정년은 65세,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11조의 2 (교원 및 직원 임용결정) ① 서강대학교 교원 및 서강대학교 일반 직원 신규 채용 시 총장은 임용 제청 전에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장을 제외한 법인 임원은 해당 면접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총장이 서강대학교 교원 및 서강대학교 일반직원 신규 임용을 제청한 경우, 임용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서강대학교 소관 부서에 면접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04.26>

제12조 (징계위원회)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이 법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인 직원은 이사장이, 대학교의 직원은 총장이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교원 및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6.20>

제13조 (재심위원회) 법인 및 학교의 일반직원재심위원회는 법인에 두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교원 및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06.20>

제14조 (감사) ① 학교법인 서강대학교 정관 제29조에 규정한 감사의 직무 지원을 위해 법인사무처 산하에 법무·감사팀을 둔다.

② 법무·감사팀은 감사의 지시 또는 승인(긴급을 요하는 경우 사후 승인)을 받아 법인, 대학, 법인과 대학의 산하기관에 대해 상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감사결과를 감사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 업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감사와 협의하여 이사장이 별도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89. 8. 30.부터 시행한다.

(2) 본 시행세칙 제8조(정년)은 1989. 3. 1.부터 적용하며 1990. 7. 1.부터 시행기로 잠정 결의된 법인 정관세칙(정관 제 18조 세칙)은 본 시행세칙의 시행으로 자동 폐기한다.

(3) 본 개정세칙은 1990년 6월 20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4) 본 개정세칙은 1992년 11월 9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5) 본 개정세칙은 1995년 6월 8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6) 본 개정세칙은 1995년 9월 5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7) 본 개정세칙은 1996년 4월 29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8) 본 개정세칙은 1999년 9월 21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9) 본 개정세칙은 2003년 4월 17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10) 본 개정세칙은 2003년 8월 21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11) 본 개정세칙은 2004년 11월 16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12) 본 개정세칙은 2007년 2월 6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13) 본 개정세칙은 2013년 7월 25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14) 본 개정세칙은 2015년 5월 13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15) 본 개정세칙은 2017년 6월 15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16) 본 개정세칙은 2017년 12월 14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17) 본 개정세칙은 2019년 6월 20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18) 본 개정세칙은 2021년 2월 8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

(19) 본 개정세칙은 2021년 4월 26일 이사회 의결로 시행한다.